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7
----------	-------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용자사업을 실시하는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 운용관 및 기금운용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조정, 위원의 임기 및 제척 규정을 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의 직위 하향 조정(안 제5조제2항)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 조정(안 제6조제2항)

- 1) 위원장 : 부구청장 => 주민생활국장
- 2) 당연직위원 : 복지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라.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안 제6조제4항 신설)

- 임기 3년, 연임 1회 제한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안 제6조제5항~제7항 신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3) 「2012부패영향평가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3. 3. 14 ~ 4. 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 결과	조치 결과
• 제6조 (기금운용 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이해충돌 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해촉)가 미흡 	반영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 원안동의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 결과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기금운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자격·요건 조항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나 위원 위촉시 40%이상 여성으로 위촉 예정 	<p>원안 동의</p>

라. 2013년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3.4.9)

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설치·운영”을 “설치·운용”으로 한다.

제2조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의”로,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자금지원”을 “소득자금 지원”으로, “기구”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곤란한 자”를 “곤란한 사람”으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한 자”를 “당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자녀로서”를 “자녀 중”으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용자대상가구”를 “용자대상 가구”로,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용 관리하며”를 “운용관리하며”로, “별도 관리한다”를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기금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을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기금운용 위원회 설치)”를 “(기금운용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1”을 “각 호”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2. 금융 및 용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3항 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용자한도 및 이율등)”을“(용자한도 및 이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년거치”를 “2년 거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당시”를 “용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당시”로, “자로서 용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사람으로서”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내규”를 “자체 내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로, “여부등을”을 “여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여부”를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 여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3항에 따라”로, “용자대상자명단”을 “용자대상자 명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용자금의 상환등)”을“(용자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를 “용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천재지변등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기한내”를 “기

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당해 기한연장 승인의”를 “해당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용자금의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 상환기한 이후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7조제2항에도”로,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도·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을 “(지도·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청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융자금의 반환, 통보)”를 “(융자금의 반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전이라고”를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체없이 이를 당해”를 “지체 없이 이를 해당”으로, “이의”를 “반환”으로, “당해 융자금”을 “해당 융자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립 하여야”를 “수립하여야”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회계년도마다 각각”을 “회계연도마다”로, “마포구의회에”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로 한다.

제18조 중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제6조제4항의 본문 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 라 한다)</u>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기금 <u>설치·운영</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u>저소득층</u>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u>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종전의 <u>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u> 자금 또는 그에 따른 용자회수금 등</p> <p>2. 3. (생략)</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마포구</u> ----- ----- ----- -- <u>설치·운영</u> ----- -----.</p> <p>제2조(기금의 설치) ----- ----- <u>저소득층의</u>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u> ----- ----- -----.</p> <p>제3조(기금의 조성) ----- <u>각 호</u>-----.</p> <p>1.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마포구” 라 한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u> ----- -----</p> <p>2. 3. (현행과 같음)</p>

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제4조(용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
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3. (생략)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용
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
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3. (생략)

4.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4. -----
그 밖의 ----

제4조(용자대상) ① -----

----- 각 호
의 어느 하나-----
-----.

1. 소득자금 지원-----
----- 가구

2.·3. (현행과 같음)

② -----

----- 곤란한 사람 -----
----- 사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그 밖의 -----
당한 사람-----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 ----- 따른 -----

용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생략)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자녀 중 -----

----- 받은 사람 -----

----- 사람으로 -----.

④ (현행과 같음)

⑤ -----
용자대상 가구-----

----- 필요한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운용 관리하며 -----

-----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
-----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기금운용 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 대상자의 선정
2.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

-----.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 위원회) ① -----

----- 각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위원회 -

-----.

1. 제4조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담당관·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의 담당팀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2. 금융 및 용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_____
_____ 1명 _____

_____ 3분의 2 _____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신 설>

<신 설>

<신 설>

에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제7조(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 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용자금의 대부신청) ①신청당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용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결정·통보)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 여부등을 결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용자한도 및 이율 등) ① -

----- 2년 거치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용자금의 대부신청) ① 용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당시 -----
----- 사람으로서 -----
----- 서식의 -----
-----.

② -----

----- 자체 내규-----.

제9조(대상자 결정·통보) ① ---
-----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

----- 여부 등을 -----
-----.

② ----- 제1항에 따른 용자

한 용자대상여부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즉시 당해 대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자명단, 대부신청서 및 용자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한다.

제11조(용자금의 상환등)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상환하되, 용자일 전일을 상환기한으로 한다.

제12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신청이 있으면 제6조

대상 여부-----

----- 해당 -----

----- 제5조제3항

에 따라 -----

----- 용자대상자 명단

제11조(용자금의 상환 등) 용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

제12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

----- 기한 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20일 전 -----

④ ----- 제3항에 따른 -----

-----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한연장 승인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구청장은 제4항에 의한 상환 기한 연장승인의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그사실을 당해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상환기한 이후에 있어서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4조(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에 따른 -----
해당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 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용자금의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
----- 제7조
제2항에도 -----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
율-----.

제14조(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

----- 해당 -----

-----.

제15조(지도·감독 및 위탁사무

에 대한 검사등) ①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용
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
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
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기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검사를 하
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를 받는 당해 금융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용자금의 반환, 통보) ①

제15조(지도·감독 및 위탁사무

에 대한 검사 등) ① -----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② 구청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 해당
----- 해당 -
----- 및 그 밖에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④ 제2항에 따라 -----
해당 -----

제16조(용자금의 반환 통보) ① -

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분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고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3.·4.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한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가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통보를 받은 가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용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전이라도-----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3.·4.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지-----
----- 체 없이 이를 해당 -----
----- 반환 -----

----- 해당 용자금-----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수립하-----
----- 여야 -----
----- 기금결산보고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
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 회계연도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

제18조(준용) -----

-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김미자
연락처	02-3153-8806